

선금 신청서

1. 용역명: 성수동 디자인융합 산업특구 조성 용역
2. 계약금액: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3. 계약년월일: 2022년04월07일
4. 착수년월일: 2022년04월07일
5. 준공기한: 2022년08월06일
6. 선금신청금액: 금58,300,000원(금오천팔백삼십만원)
7. 선금신청비율: 59.5%

귀청과 계약체결한 상기 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여 선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5월 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상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표자: 김 현 수



성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접수	재무과-15654 (2022. 5. 3. :)
----	-------------------------------

선금 사용계획서

1. 용역명: 성수동 디자인융합 산업특구 조성 용역
2. 계약금액: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3. 계약년월일: 2022년04월07일
4. 착수년월일: 2022년04월07일
5. 준공기한: 2022년08월06일
6. 선금신청금액: 금58,300,000원(금오천팔백삼십만원)
7. 선금 사용계획

(단위: 원)

구분	공종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선금 신청금액	잔액
1. 인건비				75,160,070	75,160,070	53,000,000	22,160,070
가. 책임연구원		식	1	14,417,109	14,417,109	10,479,927	3,937,182
나. 연구원		식	1	40,817,892	40,817,892	28,572,525	12,245,367
다. 연구보조원		식	1	19,925,069	19,925,069	13,947,548	5,977,521
라. 보조원		식	1	-	-	-	-
2. 경비				9,767,737	9,767,737	-	9,767,737
가. 재료비		식	1	1,000,000	1,000,000	-	1,000,000
나. 인쇄비		식	1	1,367,737	1,367,737	-	1,367,737
다. 회의비 및 자문비		식	1	7,400,000	7,400,000	-	7,400,000
3. 일반관리비		식	1	4,246,390	4,246,390	-	4,246,390
소 계				89,174,197	89,174,197	53,000,000	36,174,197
부가가치세				8,917,420	8,917,420	5,300,000	3,617,420
합 계				98,000,000	98,000,000	58,300,000	39,700,000

2022년 5월 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상호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표자 : 김 현 수



성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감독관 경유	
소속	지역경제과
성명	홍세정 (서명 또는 인)

각 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 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의 사용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 사용명세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음(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계획 및 사용 명세서 첨부)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청사정(예산의 사고이월 등)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 하는 경우 귀청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청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22년 5월 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상 호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 표 : 김 현 수



성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